

# 회원신고관리규정

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
| 제정 1972. 4. 27.  | 개정 2009. 1. 20.  |
| 개정 1979. 11. 13. | 개정 2009. 3. 10.  |
| 개정 1980. 5. 1.   | 개정 2013. 8. 21.  |
| 개정 1981. 4. 1.   | 개정 2014. 5. 14.  |
| 개정 1984. 4. 12.  | 개정 2018. 11. 21. |
| 개정 1995. 6. 13.  | 개정 2019. 07. 17. |
| 개정 1998. 3. 4.   | 개정 2021. 04. 21. |
| 개정 2001. 4. 10.  | 개정 2021. 07. 21. |
| 개정 2005. 6. 7.   | 개정 2022. 07. 27. |
| 개정 2006. 1. 10.  | 개정 2024. 12. 18. |
| 개정 2007. 4. 17.  |                  |

## 제 1 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정관 제7조에서 정한 대한건축사협회(이하 “협회” 라 한다.) 회원의 입회, 퇴회 등의 신고절차와 방법 등 회원의 정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01. 4.10, 2014. 5.14(시행일 2014. 11.1)>
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01. 4.10, 2013. 8.21, 2014. 5.14(시행일 2014. 6.11), 2018.11.21>

1. 입 회 :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가 협회에 최초로 가입하는 것을 말한다.
2. 퇴 회 : 회원으로서의 자격과 권리, 의무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을 말한다.
3. 전출 및 전입 : 정회원이 소속 건축사회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.
4. 직권퇴회 : 이 규정 제4조에 따라 회원 자격이 상실된 회원에 대하여 협회에서 직권으로 퇴회 조치하는 것을 말한다.
5. 재입회 : 회원자격이 상실된 자가 다시 협회에 가입하는 것을 말한다.

## 제 2 장 정회원

제3조(신고사항) ①정회원 또는 정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, 별지 제1호서식의 정회원신고서(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포함) 및 증빙서류 등을 해당 시도

건축사회(이하 “건축사회” 라 한다)에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 5.14(시행일 2014. 6.11), 2021. 4.21, 2021. 7.21(시행일 : 의무가입 건축사법 개정시행일부터).>

1. 입 회
  2. 퇴 회
  3. 재 입 회
  4. 전출 및 전입
  5. 연락처, 근무처, 학력, 자격 등의 변동
- ②건축사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을 접수한 경우,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협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신고사항 적용일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. 다만, 사망 또는 건축사 자격 취소의 경우 그 사유 발생일(처분일)을 퇴회일자로 한다. <개정 2014. 5.14(시행일 2014. 6.11), 2018.11.21, 2024.12.18>
1.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는 정회원신고서 제출 및 회비납부 완료일
  2. 제1항 제4호 또는 제5호는 정회원신고서 접수일
- ③정회원의 소속 건축사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4. 5.14(시행일 2014. 6.11), 2021. 7.21(시행일 : 의무가입 건축사법 개정시행일부터).>
1. 건축사사무소 등 근무처가 있는 정회원 : 근무처 소재지 관할 건축사회
  2. 근무처가 없는 정회원 : 주택 소재지 관할 건축사회
- ④정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가 입회 또는 재입회하는 경우 기존 회원자격(준회원, 전문회원, 예비회원, 학생회원)은 자동 상실된다. <개정 2014. 5.14(시행일 2014. 6.11)>
- ⑤정회원의 회비 및 퇴회위로금 등에 관한 사항은 회비의 수납 및 관리에 관한 규정과 경조비 규정에 따른다. <신설 2014. 5.14(시행일 2014. 6.11)>

제4조(직권퇴회) ①협회는 정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승인을 얻어 해당 정회원을 직권퇴회 조치할 수 있다. <개정 2014. 5.14(시행일 2014. 11.1), 2018.11.21., 2021. 7.21(시행일 : 의무가입 건축사법 개정시행일부터). 2022. 7.27, 2024.12.18>

1. 건축사 자격 또는 건축사 자격등록이 취소된 경우
  2. 정관 제11조의2에 따른 회원 권리정지에도 불구하고, 회원 권리정지일로부터 1년 이상 건축사자격 갱신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<신설 2018.11.21., 개정 2022.7.22>
  3. 정관 제36조 제1항 제1호의 입회비를 일체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<신설 2024.12.18>
  4. 사망, 실종 등 협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- ②협회가 정회원을 직권퇴회 조치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건축사회 및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<개정 2014. 5.14(시행일 2014.11.1.), 2018.11.21>

제5조(재입회) 협회에 정회원으로 재입회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, 재입회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4. 5.14(시행일 2014. 6.11), 2018.11.21., 2019.07.17., 2021. 7.21(시행일 : 의무가입 건축사법 개정시행일부터). 2022. 7.27>

1. 퇴회 후 다시 입회하고자 하는 자
2. 제4조에 따라 직권퇴회 조치된 후 협회에 다시 입회하고자 하는 자
3. 정관 제50조 제1항제3호에 따라 제명 조치된 후 협회에 다시 입회하고자 하는 자 <2022. 7.27.>

제6조(전출 및 전입) ①정회원은 제3조제3항에 따른 소속 건축사회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전출지 건축사회에서 발급한 <별지 제3호> 회비완납증명서를 첨부하여 전입지 건축사회에 전출 및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 5.14(시행일 2014. 11.1), 2024.12.18>

②정회원이 전출 및 전입신고를 한 경우 소속 건축사회는 신고 접수일을 기준으로 직전일까지는 전출지 건축사회 소속으로 하고 신고 접수일부턴 전입지 건축사회 소속으로 한다. <개정 2014. 5.14(시행일 2014. 11.1)>

1. 삭제 <2018.11.21>
2. 삭제 <2018.11.21>

③전입지 건축사회는 전출 및 전입신고를 접수하는 경우 해당 정회원의 전출지 건축사회 회비납부 여부를 확인하여 전입처리하고 전출 및 전입사실 등을 전출지 건축사회에 공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 <신설 2014. 5.14(시행일 2014. 11.1), 2024.12.18>

[전문개정 2018.11.21]

제7조(회원 권리정지 및 권리회복) ①협회는 정회원이 제6조제1항에 정한 기한 내에 전출 및 전입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거나, 신규 근무처(건축사사무소 등) 소재지 관할 건축사회로부터 정회원의 전출 및 전입신고 미이행 사실이 보고된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회원 권리정지 할 수 있다. <개정 2014. 5.14(시행일 2014. 11.1), 2022. 7.27, 2024.12.18>

②협회는 제1항에 따라 회원 권리정지한 경우, 권리정지 승인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정회원의 권리정지 사실을 건축사회 및 당사자 또는 관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 5.14(시행일 2014. 11.1), 2022. 7.27>

③협회는 제1항에 따라 회원 권리정지된 정회원이 전출 및 전입신고를 이행한 경우, 즉시 권리를 회복시켜야 한다. <신설 2014. 5.14(시행일 2014. 11.1), 2018.11.21., 2022. 7.27>

제8조(정보 기록 및 관리 등)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 및 관리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 5.14(시행일 2014. 11.1), 2018.11.21, 2019.07.17>

1. 제3조에 따른 정회원 신고사항
2. 정관 제11조의2, 제50조, 제51조에 따른 정회원 징계사항
3. 제4조에 따른 정회원 직권퇴회 조치 및 해제 사항
4. 제7조에 따른 정회원 권리 정지 및 회복 사항
5. 추대회원 등재 관리에 관한 사항 <신설 2018.11.21>
6. 협회가 정회원 정보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

### 제 3 장 준회원, 전문회원, 예비회원, 학생회원

제9조(신고사항) ①준회원, 전문회원, 예비회원, 학생회원(이하 “정회원의 회원”이라 한다.)이 되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, 별지 제2호서식의 회원신고서 및 증명서류 등을 해당 건축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준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 <개정 2018.11.21>

1. 입 회
2. 퇴 회
3. 재 입 회

4. 연락처, 근무처, 학력, 자격 등의 변동

②정회원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의 입회 또는 재입회는 협회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, 승인일부턴 입회 또는 재입회 된다. 다만, 제1항 제2호 및 제4호의 신고사항 적용일자는 접수일자로 한다.

③건축사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을 접수한 경우,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④정회원의 회원의 소속은 협회로 한다. 다만, 준회원은 입회 또는 재입회 신고를 한 건축사회를 소속 건축사회로 한다.

<본조신설 2014. 5.14(시행일 2014. 11.1)>

제10조(직권퇴회) ①협회는 정회원의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권퇴회 조치할 수 있다.

1. 준회원이 2년 이상 연회비를 미납한 경우
2. 협회 입회 당시의 자격요건을 유지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
3. 회원의 종류가 중복되는 경우
4. 사망, 실종 등 협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②협회는 제1항 제4호의 직권퇴회 조치사유가 해소된 경우 즉시 직권퇴회를 해제하여야 한다.

③협회는 정회원의 회원을 직권퇴회 조치 또는 직권퇴회 해제한 경우 그 사실을 건축사회 및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<본조신설 2014. 5.14(시행일 2014. 11.1)>

제11조(정보 기록 및 관리 등)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 및 관리하여야 한다.

1. 제9조에 따른 정회원의 회원의 신고사항
2. 제10조에 따른 정회원의 회원의 직권퇴회 조치 및 해제 사항
3. 협회가 정회원의 회원의 정보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

<본조신설 2014. 5.14(시행일 2014. 11.1)>

제12조(보칙) 정관 및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규정의 범위 내에서 회장이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.

<본조신설 2014. 5.14(시행일 2014. 11.1)>

부 칙

본 규정은 1972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본 규정은 198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- ①본 규정은 198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②중전 규정에 의거 폐업위로금을 지급받은 자가 재입회를 하고자 할 때에는 입회비와 함께 폐업시에 지급받은 폐업위로금을 본협회에 납부하여야 한다.

부 칙

본 규정은 198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본 규정은 1984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본 규정은 1995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이 규정은 1998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.

2. 경과조치

①제3조제2항 및 제7조제1항의 개정에 불구하고 동 규정 개정 이전에 신고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.

②제12조제2항제1호에 의한 폐업위로금 반납은 폐업후 5년 이내에 재입회한 경우에 한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01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2001년 1월 1일 이후 입회한 자중 이 규정 개정 이전에 신고된 자는 개정규정에 의거 신고된 것으로 본다.

제3조(다른 규정의 개정) ①경조비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 “본 협회에서 지급하여야 한다.” 를 “본 협회에서 지급하여야 한다. 다만, 지급대상은 2000년 12월 31일이전 입회한 회원에 한한다.” 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05년 6월 7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개정규정 제6조 및 제12조제3항은 2005년 2월 21일부터 적용한다.

제2조(휴업회원에 대한 적용특례) 이 규정 시행일 현재 휴업중인 회원의 관청신고 휴업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에도 이 개정규정에 따라 휴업한 것으로 본다.

제3조(다른 규정의 개정) 회비의 수납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3조제1항제1호의 단서조항 “다만, 회원신고관리규정 제12조제2항에 입회비를 부과하지 아니한다.” 를 “다만, 회원신고관리규정 제12조제2항및제3항 규정에 의한 입회비 면제대상 재입회 회원에 대하여는 입회비를 부과하지 아니한다.” 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6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07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회비미납으로 제명된 자에 대한 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회비미납으로 제명처분 받은 자중 협회 회원으로 미가입한 자는 이규정 시행일에 제명된 것으로 본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9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3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이 규정은 201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2조, 제3조, 제5조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정관개정이 승인된 날(2014. 6.11)로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①이 규정 시행일 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폐업한 정회원은 이 규정에 따라 퇴회한 것으로 본다.

②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휴업신고된 정회원에 대하여는 재개업 신고 직전 월까지 회비를 면제하고, 휴업기간은 정회원 가입기간 산정시 산입하지 아니한다.

③종전 정관 제5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제명된 자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정관개정이 승인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재입회하는 경우 이 규정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회원 가입기간 산정시 종전 정회원 가입기간을 산입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이 규정은 2018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5조 제2호의 개정규정은 정관 개정(안) 승인일부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9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이 규정은 2021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에 대한 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협회에 입회한 정회원은 개정규정 제3조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건축사협회 의무가입 건축사법 개정 시행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제명된 자의 재입회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, 종전 정관 제50조제1항 제3호 및 제51조제1항 제3호에 따라 제명된 자가 다시 입회하는 경우에는 종전 규정 제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재입회한 것으로 본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장관 정관 인가일(2022년 7월 29일)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4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
**정회원 신고서**

| 신 고 인 |                         | 성 명   | 건축사 자격번호 | 생년월일 *법정 생년월일 기재 | 성 별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| . . .            | 남 / 여                     |
| ①연락처  | 자택주소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자택전화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| 우편물 수령지                 | <input type="checkbox"/> 근무처 <input type="checkbox"/> 자택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( )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| 휴대폰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E-mail                    |
| ②근무처  | 종전<br>건축사사무소<br>개설 신고번호 | *【예】 서초구-건축사사무소-000<br>- 건축사사무소 -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| 사무소명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폐업/퇴사/휴업일자                |
|       | 현재<br>건축사사무소<br>개설 신고번호 | *【예】 서초구-건축사사무소-000<br>- 건축사사무소 -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| 사무소명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개설/입사/재개업일자<br>폐업/퇴사/휴업일자 |
|       | 소재지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전화<br>FAX                 |
| ③학력   | * 필수기재사항                | 학 교   | 학과(전공)   | 학 위              | 졸업(취득)년월일                 |
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초등학교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. . .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중 학교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. . .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고등학교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. . .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대 학교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. . .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대 학 원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. . .                     |
| ④자격   | * 필수기재사항                | 자 격 명   | 자격번호     | 자격취득 년월일         | 자격취득국가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| . . .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대한건축사협회 회원신고관리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  
신고인 (서명 또는 인)

**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회 회장 귀하**

| 접수 및 소속 건축사회 : ( )건축사회       |  |   |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|--|
| 접수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| 정회원번호  |   |  |
| 접수일자                         | 접수필 (인)  |   |  |
| 시.도건축사회<br>접수담당자<br>확인사항     | <input type="checkbox"/> 입 회<br><input type="checkbox"/> 재 입 회                   | <input type="checkbox"/> 사무소 개설 <input type="checkbox"/> 근무처 입사 <input type="checkbox"/> 근무처 없음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input type="checkbox"/> 회비 납부<br><input type="checkbox"/> 입회비 면제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input type="checkbox"/> 퇴 회   | <input type="checkbox"/> 사무소 폐업 <input type="checkbox"/> 근무처 퇴사 <input type="checkbox"/> 사망 <input type="checkbox"/> 자진퇴회 |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<input type="checkbox"/> 퇴회위로금 지급대상 : <input type="checkbox"/> 청구 <input type="checkbox"/> 미청구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input type="checkbox"/> 퇴회위로금 미지급 대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input type="checkbox"/> 전출 및 전입   | 전출지 ( )건축사회   | <input type="checkbox"/> 근무처 폐업/퇴사 <input type="checkbox"/> 근무처 없음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전입지 ( )건축사회   | <input type="checkbox"/> 근무처 개설/입사 <input type="checkbox"/> 근무처 없음 |
| <input type="checkbox"/> 근무처 | <input type="checkbox"/> 개설 / 입사 / 재개업<br><input type="checkbox"/> 사무소 정보(소재지 등) | <input type="checkbox"/> 폐업 / 퇴사<br><input type="checkbox"/> 근무처 없음   | <input type="checkbox"/> 휴업  |

■ 첨부서류 : (뒤쪽) 참조

(뒷쪽)

■ 첨부서류

※ 첨부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함.

- 1) 반명함판 사진 2매
- 2) 근무처에 관한 첨부서류(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서류)
  - 가) 건축사사무소 개설자
    - (1) 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확인증 사본 1부
    - (2)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
  - 나) 건축사사무소 소속된 자(건축사사무소 개설자가 아닌 건축사)
    - (1) 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확인증 사본 1부
    - (2)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
    - (3) 재직증명서 1부 또는 4대 보험(산재, 건강, 고용, 국민연금中 택1) 관리기관에서 제공하는 증명서 1부(소속 직원인 경우에 한함)
  - 다) 건축사사무소가 아닌 근무처 소속된 자
    - (1)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
    - (2) 재직증명서 1부 또는 4대 보험(산재, 건강, 고용, 국민연금中 택1) 관리기관에서 제공하는 증명서 1부(소속 직원에 한함)
  - 라) 근무처가 없는 경우(현재 근무처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한 용도)
    - (1) 4대보험(산재, 건강, 고용, 국민연금中 택1)관리기관에서 제공하는 증명서 1부
- 3) 학력, 자격에 관한 첨부서류(해당자에 한함)
  - 가) 학력 :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취득증명서 등
  - 나) 자격 : 자격증 사본 등

※ 학력 및 자격의 첨부서류는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음.
- 4) [별지 제1호의2 서식]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
- 5) 전출·전입 회원의 추가 첨부서류
  - 전출지건축사회에서 발행하는 회비 완납 사실확인 서류 (회비완납증명 공문, 증명서, 확인서 등)

##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

대한건축사협회는 정관에서 정한 목적 및 사업 추진을 위하여 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15조 및 제17조,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대하여 안내하고 다음과 같이 본인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.

### 개인정보 수집·이용 안내 및 동의

| 수집 및 이용 목적  | 수집항목  | 보유 및 이용 기간  |
|---|---|---|
| 회원관리, 협회 소식 및 법률 개정사항 등 공지사항, 간행물 제공, 기타 회원 서비스 및 제증명 발급 등 업무 | <b>[인적사항]</b><br>성명, 생년월일, 성별, 주소(사무소, 자택), 연락처(전화번호, 휴대폰), 이메일, 학·경력사항<br><b>[그외 회원정보]</b><br>회원신고사항(입회, 재입회, 전출 및 전입, 근무처, 퇴회(사망정보 포함) 신고정보 등), 지자체로부터 통보된 건축사법에 따른 징계사항, 건축사 자격등록 정보(건축사 자격번호, 유효기간, 등록상태 등),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보 및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정보 | 입회시 수집된 정보는 정회원 자격이 유지되는 동안 보유·이용됨.<br>※ 정회원 자격이 상실되더라도 재입회시까지 회원가입기간 산정 등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보유·이용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<br><input type="checkbox"/> 동의합니다. <input type="checkbox"/> 동의하지 않습니다. |

동의 여부는 본인의 자유의사로 결정하되, 동의 거부시 서비스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 하는데 동의하십니까?

동의합니다.  동의하지 않습니다.

202 년 월 일

동의자 확인 (자격번호) : (성 명) : (인 또는 서명)

###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안내 및 동의

| 제공받는 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이용 목적   | 제공하는 항목  |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본협회<br>사·도건축사회<br>지역건축사회           | 협회(사·도건축사회 및 지역건축사회 포함) 업무 및 운영과 관련하여 회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등에 활용 | <b>[인적사항]</b><br>성명, 생년월일, 성별, 주소(사무소, 자택), 연락처(전화번호, 휴대폰), 이메일<br><b>[그외 회원정보]</b><br>회원신고사항(입회, 재입회, 전출 및 전입, 근무처, 퇴회(사망정보 포함) 신고정보 등)                     | 제공받는 자가 개인정보 제공 요청시 명시한 목적 달성시까지 |
| 임원선거관리규정에 따라 확정된 후보자 및 투표시스템 관련 기관 | 선거공보 발송 등 선거 관련 업무에 활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b>[인적사항]</b><br>성명, 우편물 수령주소, 연락처(전화번호, 휴대폰), 이메일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회원서비스 운영대행 업체                      | 협회 간행물 등 회원에게 필요한 각종 정보를 이용한 우편택배 발송 및 협회 주관행사 참석확인에 활용   | <b>[인적사항]</b><br>성명, 우편물 수령주소, 연락처(전화번호, 휴대폰), 이메일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국토교통부 등 정부 중앙 행정 기관                | 법률 개정 및 국가 정책 수립 등에 활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b>[인적사항]</b><br>성명, 생년월일, 성별, 주소(사무소, 자택), 연락처(전화번호, 휴대폰), 이메일, 학·경력사항<br><b>[그외 회원정보]</b><br>지자체로부터 통보된 건축사법에 따른 징계사항, 건축사 자격등록 정보(건축사 자격번호, 유효기간, 등록상태 등)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회원의 개인정보는 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18조에 따라 제3자에게 제공되며, 동의 여부는 본인의 자유의사로 결정하되, 동의 거부 시 서비스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?

동의합니다.  동의하지 않습니다.

202 년 월 일

동의자 확인 (자격번호) : (성 명) : (인 또는 서명)

대한건축사협회 회장 귀중

|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
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<b>접수번호(접수일자)</b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b>결</b>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
| <b>정회원 번호</b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b>제</b>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
| <b>회원 신고서</b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
| <b>신고 종류</b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* 접수 담당자가 기재합니다.               |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
|  | <input type="checkbox"/> 입 회   | <input type="checkbox"/> 준회원 ( ) 건축사회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
|  | <input type="checkbox"/> 퇴 회   | 사유 : <input type="checkbox"/> 전문회원 <input type="checkbox"/> 예비회원( <input type="checkbox"/> 실무수련자, <input type="checkbox"/> 건축사사무소 종사자) <input type="checkbox"/> 학생회원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
|  | <input type="checkbox"/> 재 입 회 | <input type="checkbox"/> 준회원 ( ) 건축사회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
| <input type="checkbox"/> 변동사항                    | <input type="checkbox"/> 연락처   | 근무처 (사무소)  | <input type="checkbox"/> 근무처 변경<br><input type="checkbox"/> 사무소명 <input type="checkbox"/> 소재지<br><input type="checkbox"/> 전화 <input type="checkbox"/> FAX | <input type="checkbox"/> 학 력 | <input type="checkbox"/> 자 격 |  |
| * 신규입회, 재입회의 경우만 해당사항을 모두 기재하시고, 이외는 변동신고 사항만 기재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
| <b>신 고 인</b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성 명  | 건축사 자격번호  | 생년월일                         | 성 별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
|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남 / 여                        |  |
| <b>①연락처</b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자택주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우)   |   | 전 화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
|  | 우편물 수령지                        | 우)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
|  | 휴 대 폰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 | E-mail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
| <b>②근무처</b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* 준회원, 전문회원, 예비회원은 필수 기재       |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
|  | <b>변 경 전</b>                   |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번호   | 건축사사무소일 경우만 기재<br>- 건축사사무소 -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
|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근무처명   |   | 전 화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
|  | <b>변 경 후</b>                   |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번호   | 건축사사무소일 경우만 기재<br>- 건축사사무소 -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
|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근무처명   |   | 전 화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
|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소 재 지  | 우)  | FAX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
| <b>③학 력</b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학 교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학과(전공)   | 학 위<br><input type="checkbox"/> 재학 <input type="checkbox"/> 졸업  | 졸업/취득 년월일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
|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
|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
| <b>④자 격</b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자 격 명                          | 자격번호   | 자격취득 년월일  | 발 행 처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
|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
| 대한건축사협회 회원신고관리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.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
| 년 월 일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
| 신고인 (서명 또는 인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
| <b>대한건축사협회</b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b>건축사회 회장 귀하</b>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
| ■ 첨부서류 : (뒤쪽) 참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

|   |
|---|
| <b>■ 첨부서류</b>   |
| <p>* 첨부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함.</p> <p><b>1) 반명함판 사진 1매</b></p> <p><b>2) 근무처에 관한 첨부서류(건축사사무소 소속된 자 또는 건축사사무소가 아닌 근무처 소속된 자)</b><br/>: 재직증명서 1부 또는 4대 보험(산재, 건강, 고용, 국민연금中 택1)관리기관에서 제공하는 증명서 1부</p> <p><b>3) 학력, 자격에 관한 첨부서류(해당자에 한함)</b><br/>가) 학력 : 졸업증명서, 학위취득증명서 등<br/>나) 자격 : 자격증 사본 등<br/>* 학력 및 자격의 첨부서류는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음.</p> |

